

氣候變化關聯 國際環境協約體制下的 貿易規制條項

鄭禮模*

-
- I. 序論
 - II. UN氣候變化協約과 교토議定書의 概要와 主要 內容
 - III. 몬트리올議定書의 貿易規制條項 分析
 - IV. 교토議定書와 몬트리올議定書의 比較 分析
 - V. 結論
-

I. 序論

20세기 후반부터 그 심각성이 가속화된 지구촌의 環境問題는 이제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全般의 問題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며 國家間 貿易去來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貿易과 環境의 連繫問題는 이미 1990年代 初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2000年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중요한 議題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특히 특히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지난 세기에 經濟的인 豐饒의 時代를 구가해 왔지만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자원 소비, 무분별한 開發 등으로 자원 고갈과 環境汚染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석탄·석유 등 化石燃料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로 인해 발생하는 地球溫暖化¹⁾가 氣候變化와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1)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化石燃料(化石燃料)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₆) 등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지표면으로 다시 배출함으로써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年 동안 0.6-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95년 제2차 보고서에서 '현재(1992年)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에는 대기중의 CO₂ 농도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2年 6月 브라질 리우 環境會議에서는 석탄, 석유, 가스 등 경제활동에 필수적 요소인 化石燃料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UN 氣候變化協約(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을 채택하였고 이 協約에 따라 1997年 12月 개최된 교토회의에서는 선진국과 동구권 38개국을 대상으로 2008年에서 2012년까지 1990年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서 5.2% 減縮한다는 내용을 담은 '氣候變化協約에 관한 교토포의서'(Kyoto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교토포의서의 채택은 전세계의 經濟體制가 環境과의 調和, 環境 中心의 體制로 轉換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현재, 범세계적인 環境問題를 國際的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國際環境協約 또는 多者間環境協約(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은 216개에 이르고 있으며²⁾ 이 중 약 20여개는 環境保護를 목적으로 한 貿易規制條項을 포함하고 있다. 貿易規制條項을 포함하고 있는 國際環境協約 중 가장 성공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1987年에 채택된 몬트리올議定書(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이다. 몬트리올議定書는 오존층³⁾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減縮을 主要 內容으로 하며 1985年 3月에 채택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協約'(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의 후속작업의 결과로 1987年 9月 채택되었다. 한편 교토포의서는 몬트리올議定書처럼 구체적인 貿易規制條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실가스 減縮이라는 목표설정은 全世界 經濟와 産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國家間 貿易去來에도 중요한 貿易規制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 이런 관점에서 本稿는 氣候變化와 關聯된 主要 國際環境協約인 교토포의서와 몬트리올議定書의 貿易規制 內容을 分析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제 II 절에서는 교토포

가 산업혁명 以前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이 1990年 대비 2°C 상승하고 해수면도 50cm 이상 상승하여, 마살군도 등 군소 도서국이 침수되고 농경지 및 주거지역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UNFCCC 홈페이지(<http://www.unfccc.de/resource/iuokit/fact01.html>)).

- 2) WTO 1999年 10月 8日 字 報道자료(<http://www.wto.org/wto/environ/press140.htm>).
- 3) 오존층은 지구를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대기권의 보호막으로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훼손되면 인간과 자연계에 위협을 주게 된다. 오존층에 대한 연구는 1924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Dobson 교수가 대기중의 오존량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1957年 세계기상기구(WMO)의 주관하에 지구차원으로 체계적인 관측을 하였다. 1977年부터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기상기구 등과 협조하여 오존층의 변화 동향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oenv.go.kr/>)).

議定書의 기본골격 협약인 UN 氣候變化協約과 교토議定書의 成立 經緯 및 主要 內容을 살펴보았으며 제 III 절에서는 몬트리올議定書의 기본골격 협약인 비엔나協約과 몬트리올議定書의 主要 內容을 개괄하고 몬트리올議定書의 貿易規制 內容을 살펴보았다. 제 IV 절에서는 몬트리올議定書와 교토議定書와의 比較를 통해서 교토議定書의 條項 中 貿易規制로서 작용할 內容을 分析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는 UN 氣候變化協約上 아직까지는 開途國으로 분류되어 있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除外되어 있지만 先進國으로부터의 環境 글로벌스탠더드 압력이 可視化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CO2 배출량에 대한 貿易規制의 內容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結論에서는 교토議定書와 관련하여 나타날 貿易規制에 대비하여 國家와 企業이 向後 해결해야 할 課題들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UN 氣候變化協約과 교토議定書의 概要와 主要 內容

1. 교토議定書의 기본골격 협약인 UN 氣候變化協約의 概要

(1) 成立背景과 經緯

UN 氣候變化協約은 氣候變化의 가능성과 否定的인 영향 防止를 위한 국제적 조치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1979年의 제 1차 「世界氣候會議」에서 태동하였다.⁴⁾ 이후 氣候變化에 대한 과학적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전되어 6年 뒤인 1985年 11月에는 오스트리아 Villach에서 「온실가스의 氣候變化에 대한 영향평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CO2 배출이 지속될 경우 向後 50年後에는 지구의 기온이 5℃ 상승할 전망으로 氣候變化에 관련된 정책 선택을 조사하기 위한 Task Force를 만들 것을 勸告하였다.⁵⁾

1988年 6月에는 캐나다에서 300여명의 과학자와 정책결정권자가 참석한

4) Peter B. Slope and Andrew Blowers(ed), *Environmental Problems as Conflicts of Interest*, Arnold, 1996. p.198.

5) Alexandre Timoshenko and Nicholas Robinson, *Addressing Global Climate Change: the Emergence of a New World Order?*, Washington, DC : Environment Law Institute, 1989. pp.3~4.

가운데 「변화하는 大氣에 대한 世界會議」가 개최되어 氣候變化 防止를 위한 국가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는데 2005년까지 1988年 기준으로 약 20%의 CO2 배출량을 減縮할 것을 勸告한 토론토 목표(Toronto Target)를 선언하였다.⁶⁾ 아울러 같은 해 11月에는 「氣候變化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구성되었는데 IPCC는 세계기상 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하에 설립된 것으로 地球溫暖化 防止를 위한 첫 국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있다. IPCC는 1990年 제1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地球溫暖化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地球에 대해 현실적인 위협을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1979年의 제1차 「世界氣候會議」에 이어 11年만인 1990年 11月 제2차 「世界氣候會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IPCC 보고서를 기초로 氣候變化 防止를 위한 世界氣候協約을 제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설정되지는 않았다. 이후 1990年 12月 UN총회는 결의를 통해 氣候變化協約에 관한 基本協約을 준비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창설하였으며 1991年 1月부터 1992年 5月까지 5차례에 걸쳐 INC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前文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氣候變化協約案이 마련되었으며 1992年 6月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UNCED :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UN 氣候變化協約」이 채택되었다.⁷⁾ 이로써 CO2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함으로써 環境과 에너지 문제를 직접 연결한 역사상 最初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UN 氣候變化協約은 1994年 3月, 50개국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1993年 12月에 동 協約에 47번째로 가입하였다. 이 協約은 2000年 5月 17日 현재 18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⁸⁾

(2) UN 氣候變化協約의 主要 內容

UN 氣候變化協約의 정식 명칭은 「氣候變化에 관한 UN 基本協約(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UN 氣候變化協約은

6) Peter B. Slope and Andrew Blowers(ed), *op. cit.*, p.199.

7) <http://www.unfccc.de/resource/iuckit/fact17.html>.

8) <http://www.unfccc.de/resource/convkp.html>.

前文과 26 개조 그리고 부속서 I, II로 구성되어 있다.⁹⁾ 우선 前文에서는 UN 氣候變化協約의 사상과 의의가 규정되어 있다. 즉, UN 氣候變化協約은 지구의 氣候變化와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氣候變化의 세계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모든 국가가 그들의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각각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國際的 대응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후체계를 保護할 것을 결의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協約 제 2 조에서는 協約의 목적은 대기권, 수권, 생물권 및 암석권 전체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총체인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協約 제 3 조에서는 氣候變化協約의 다섯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따른 의무 부담 원칙, 둘째, 개도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셋째, 예방 및 비용효과성의 원칙, 넷째,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다섯째, 의무부담 체계는 공동·차별화 원칙에 따라 協約 당사국을 Annex I 및 Non-Annex I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Annex I 국가는 協約 채택 당시 OECD 24 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 개국에서 1997 年에 5 개국이 추가되면서 40 개국이 되었다.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에 관한 국가통계의 작성 및 공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조치를 포함하는 국가계획의 수립과 이행,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온실가스 흡수원 관리·보존·강화 노력, 온실가스 배출·흡수 통계 및 국가보고서 제출¹⁰⁾ 등의 의무가 있다. 또한 선진국은 다음과 같은 특별 의무가 있다.

-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2000 年까지 1990 年 수준으로 유지
-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를 보호·강화
- 地球溫暖化 防止를 위한 구체적인 국가정책을 채택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9) 영문 협약全文(<http://www.unfccc.de/resource/conv/index.html>).

10) 선진국은 1994 年 3 月 協約 발효 후 6 個月이내, 개도국은 3 年이내에 제 1 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 年 3 月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선진국 당사자는 정책과 조치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그밖의 당사자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 경제·행정적 수단들을 적절히 그 밖의 당사자와 조정
- 몬트리올議定書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수준의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과 관행을 찾아내어 정기적으로 검토
- 기후체제와 기후변화, 그리고 여러 대응전략의 경제적·사회적 결과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포괄적이고 공개적이며 신속한 교환을 협력
- 이행관련 정보를 당사국총회에 통보

2. 교토議定書의 概要

(1) 成立背景과 經緯

UN 氣候變化協約에 따라 당사국들은 1995 年부터 5 차례에 걸쳐 協約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하였는데 교토議定書는 제 1 차 당사국총회의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에 의거 제 3 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제 1 차 당사국총회(1995 年 3 月 28 日 - 4 月 7 日, 베를린)에서는 베를린 위임사항을 채택하였다. 즉, 協約上 2000 年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 年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정책 조치를 취한다는 선진국의 공약(commitment)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짓고 1997 年末까지 2000 年 이후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가를 Annex I 국가로 한정하고 2000 年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議定書를 1997 年 제 3 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議定書案 준비를 위해 「특별그룹(AGBM : Ad-hoc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책임분담론'이 제기되었으나, 우선 先進國에 한정된 의무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2 차 당사국총회(1996 年 7 月 8 日 - 19 日, 제네바)에서는 氣候變化관련 정부간 협의체(IPCC) 2 차 보고서(the Second Assessment Report) 내용을 공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간활동에 의한 氣候變化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각료선언

(Minist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는데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하기로 재확인하였다.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특별그룹(AGBM)은 1997년 10월까지 선진국의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하였고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여부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3차 당사국총회(1997년 12월 1일 - 11일, 日本 교토)에서는 교토議定書를 채택함으로써 氣候變化協約의 國際環境規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1998년 개최된 제 4차 당사국총회와 1999년 제 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제 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실천 계획'(Buenos Aires Action Plan)을 선언하여 주요 주제에 대한 결론도출 시점을 2000년 제 6차 당사국총회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즉, 氣候變化의 영향에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확대의 방법론 문제, 개발과 기술지원의 문제, 의무부담에 대한 선진국·개도국간의 장기적 형평성 문제, 교토 메커니즘의 세부 실행 방법론 확정 문제, 정책과 수단의 개발 문제 등은 선진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에 따라 서로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한편 회의 개최국인 아르헨티나는 1998년 제 4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과 같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중에 의무감축 약정을 하기로 하고 1999년 11월 제 5차 당사국총회에서 BAU(Business As Usual scenario) 대비 2-10%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 5차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미국과 유럽 등의 의견대립으로 획기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교토議定書의 구체적 이행방안,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능력형성에 관한 작업계획 수립 등을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 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다.

(2) 교토議定書의 主要 內容

교토議定書의 主要 內容은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年間 1990년 배출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하고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의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EU 등 「Annex I 국가」 38개국(Annex I 국가 40개국 중 協約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는 除外)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다음과 같다.¹¹⁾

- 감축목표율 : 1990年 배출량 대비 평균 $\Delta 5.2\%$
- $\Delta 8\%$: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等
 - $\Delta 7\%$: 미국
 - $\Delta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Delta 5\%$: 크로아티아
 - 0%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1\%$: 노르웨이
 - $+8\%$: 호주
 - $+10\%$: 아이슬랜드

한편 대상가스는 CO₂, CH₄, N₂O, HFC, PFC, SF₆ 等 6개 가스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₆ 等の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年度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토議定書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1990年度 Annex 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 차지한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된 후 90日後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2000年 1月 13日 현재 84개국이 동 議定書에 서명하였는데 서명국 중 Annex I 국가는 23개국으로서 Annex I 국가 배출량의 38.7%를 점유하고 있다.

<서명국>

- Annex I 국가: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EU,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 모나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3) 교토 메커니즘의 概要

교토議定書는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自國內에서 모두 이행하기에는 限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3국의 의무감축 초과달성분을 구입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移轉을 허용하는 등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신축적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을 인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란, 議定書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11) 영문 협약 全文(<http://www.unfccc.de/resource/docs/convkp/kpeng.html>).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동이행제도란, 議定書 제 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 A국이 선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는 議定書 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 A국이 개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自國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배출권의 거래량에 制限을 두어 自國內 노력을 촉진하는 문제(Supplementarity)와 선진 기술과 자본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부분(Additionality)에 대한 국제간 합의 도출 등에 대해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제 6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年 83.1백만 TC에서 1997年에는 141.1백만 TC로 약 1.7배 증가하였는데 1997年의 배출량을 가스별로 살펴보면 CO₂가 84.8%, CH₄ 12.2%, N₂O 1.4%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에너지부문이 83.9%, 폐기물 부문이 9.5%, 산업공정부문이 9.4%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1997年의 에너지부문 CO₂ 배출량은 세계 10위로 세계전체의 1.8%수준이다.¹²⁾

Ⅲ. 몬트리올 議定書의 貿易規制條項 分析

1. 몬트리올 議定書의 概要

몬트리올 議定書는 CFC(프레온가스), 할론(Halon), 메틸브로마이드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減縮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폐기를 통해 오존층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 자외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87年 9월에 채택된 것으로 2000年 3월 현재 175개국에서 비준 발효되고 있다.

몬트리올 議定書의 기본골격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協約'(Vienna Con-

12) 미국은 23.8%로 1위, 중국은 13.6%로 2위, 일본은 5.1%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ug. 1999).

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은 몬트리올 議定書가 채택되기 2年 6個月前인 1985年 3月에 채택되었다. 이후 오존층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1990年 영국 런던에서 議定書를 1차 개정하였으며, 1992年 11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4차 당사국총회에서 규제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새롭게 추가하는 제 2차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1997年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9차 당사국총회에서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감축일정을 더욱 강화한 제 3차 개정서를 채택하였으며 1999年 11月 제 11차 당사국총회에서 BCM(브로모클로로메탄)을 규제대상물질로 추가한 북경개정서를 채택하였다. 各 議定書別 규제대상 물질과 감축일정을 보면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各 議定書別 규제대상 물질 및 비준국가수¹³⁾

의정서	규제대상 물질	비준국가수
몬트리올 議定書	CFC 5종과 할론 3종 등 8종	175개국
런던개정서 (1차)	CFC 10종과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 추가, 총 20종	139개국
코펜하겐개정서 (2차)	HCFC 40종, HBFC 34종, 메틸브로마이드 추가, 총 95종	105개국
몬트리올개정서 (3차)	상 동	37개국
북경개정서 (4차)	BCM(브로모클로로메탄) 추가, 총 96종으로 확대	1개국, 미발효

오존층 파괴물질 총 96종 중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CFC, 할론,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 등 20종이다. 한편 우리 나라는 1992年 2월에 비엔나協約 및 몬트리올 議定書에 가입하였으며 1차, 2차, 3차 개정서에도 모두 가입하였다. 한편 議定書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1991年 제정하고,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CFC 등 특정물질 사용업자로서 하여금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물질을 유효하게 이용하고 사용량 삭감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1993年 5月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13) 2000年 3月 31日 現在, The Ozone Secretariat(www.unep.ch/ozone/ratif.htm).

<표 2> 몬트리올議定書의 규제물질별 감축일정

규제물질	선진국	개도국	용도
프레온(CFC) (부속서A-I)	'96년 1월 전폐 (필수용도 제외)	'95~'97 평균생산·소비량기준 -2003년 1월 이후 20% 감축 -2005년 1월 이후 50% -2007년 1월 이후 85% -2010년 1월 이후 전폐	냉장고, 에어컨 냉매, 전자제품 등 세정제
할론 (부속서A-II)	'94년 1월 전폐	'95~'97 평균 생산·소비량기준 -2002년 1월 이후 동결 -2005년 1월 이후 50% 감축 -2010년 1월 전폐	소화약제 등
기타 프레온 (부속서B-I)	'96년 1월 전폐	'98~2000 평균 생산·소비량기준 -2003년 1월 이후 동결 -2007년 1월 이후 85% -2010년 1월 이후 전폐	
사염화탄소 (부속서B-II)	'96년 1월 전폐	'98~2000 평균 생산·소비량기준 -2005년 1월 이후 85% 감축 -2010년 1월 이후 전폐	CFC의 원료, 살충제 등
메틸클로로 포름 (부속서B-III)	'96년 1월 전폐	'98~2000 평균 생산·소비량기준 -2003년 1월 이후 동결 -2005년 1월 이후 30% 감축 -2010년 1월 이후 70% -2015년 1월 이후 전폐	금속세정, 드라이크리닝 용 용제, 에어로졸 등
염화불화탄소 (HCFC) (부속서C-I)	'89 HCFC소비량+부속서 A-1 물질소비량의 2.8% 기준 -1996년 1월 이후 동결 -2004년 1월 이후 35% -2010년 1월 이후 65% -2015년 1월 이후 90% -2020년 1월 이후 99.5% -2030년 1월 이후 전폐	2015년 소비량 기준 -2016년 1월 이후 동결 -2040년 1월 이후 전폐	CFC 대체품
HBFC (부속서C-II)	'96년 1월 이후 전폐 (필수 용도 제외)	'96년 1월 이후 전폐 (필수 용도 제외)	할론 대체품
M e t h y l Bromide (부속서 E)	'91 생산·소비량기준 - '96년 1월 이후 25% -2001년 1월 이후 50% -2003년 1월 이후 70% -2005년 1월 이후 전폐 (방역, 선적전 처리 용도 제외)	'95~'98 생산·소비량 기준 -2002년 1월 이후 동결 (방역, 선적전 처리 용도 제외) -2005년 1월 이후 20% 감축 -2015년 1월 이후 전폐	농산물검역 선적전 처리

2. 몬트리올 議定書의 貿易規制 內容 分析¹⁴⁾

(1) 감축목표의 설정, 단계적 감축계획의 실천

몬트리올 議定書 당사국은 부속서 A, B, C 등 각 규제물질별로 단계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국내소비 및 생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기준연도에 대한 생산량, 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최선의 추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사국-비당사국간의 수출입 금지

몬트리올 議定書 제 4 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첫째, 부속서 A에 속하는 규제물질은 1990年 1月 1일부터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며, 1993年 1月 1일부터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도 금지한다.

둘째, 부속서 B에 규정된 규제물질은 런던개정서 발효 후 1年 안에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런던개정서 발효 후 1年부터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도 금지한다.

셋째, 부속서 C-II에 규정된 규제물질은 코펜하겐개정서 발효 후 1年 안에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코펜하겐개정서 발효 후 1年부터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도 금지한다.

넷째, 1992年 1月 1日까지 상술된 부속서 A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속서 발효 후 1年 안에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며, 발효후 3년안에 상술된 부속서 B 및 C-II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속서 발효 후 1年안에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

14) 강상인·박준영,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12. pp.38~40; 全京一, “WTO와 國際環境協約上の 貿易制限條項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請求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7. pp.172~185; 鄭鎮百, “WTO體制下的 環境保護에 근거한 國際貿易規制”, 博士學位請求論文, 釜山大學校 大學院, 1997. pp.110~114; 庚相喜, 國際環境規制와 産業競爭力, 産業研究院, 1997. pp.115~117.

을 금지한다. 부속서 A에 속하는 규제대상물질 함유제품으로는 자동차 및 트럭용 냉방기구, 가정용 및 상업용 냉장고와 냉방기, 의료용을 제외한 에어로졸 제품, 휴대용 소화기, 절연관, 패널 및 파이프 덮개 등이 그 예이다.¹⁵⁾

다섯째, 1997년에 개최된 제9차 당사국회의에서는 메틸브로마이드의 비당사국과의 교역금지를 채택하였는데 동 조항의 발효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메틸브로마이드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의정서상의무를 이행하는 비당사국에 대해서는 교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제4조에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규제물질의 생산 및 이용 기술을 비당사국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재정 원조를 자제하도록 하는 비무역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貿易規制措置는 議定書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非당사국이 향유할 수 있는 이점을 배제시키고 그들이 議定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

(3)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규제물질에 대한 감축 및 전폐일정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차별화된 적용을 하고 있다. 개도국은 규제물질 1인당 연간소비량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조항들이 정한 규제일정으로부터 규제조치의 준수를 일정기간 연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부속서 A 규제물질은 1995~1997년 생산·소비량 혹은 1인당 연간 생산·소비량이 0.3kg 미만일 경우, 부속서 B 규제물질은 1998~2000년 생산·소비량 혹은 1인당 연간 생산·소비량이 0.2kg 미만인 경우 선진국의 규제일정으로부터 10년간 유예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1994년 10월 제6차 당사국총회시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아 CFC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소비금지 등 개도국 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15) 1991년 6월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부속서 D가 채택되었다.

16) 鄭鎮百, 전거서, p.114; Scotte Barrett, "D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Really Works?," Weathervane, pp.2~4.

(4) 감축의무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수출규제

당사국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한 貿易規制는 1997年 제9차 몬트리올 議定書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정서에 명시된 단계적 감축시한 이후에도 규제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 물질의 재생 혹은 중고 물질의 경우에도 수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2000年 1月까지 모든 당사국은 부속서 A, B, C, E 등 모든 규제대상 물질에 대하여 수출입 허가제도를 시행하는데 개도국에 대해서는 부속서 C 규제물질은 2005年까지, 부속서 E 규제물질은 2002年 1月까지 유예하도록 하였다.

IV. 교토 議定書와 몬트리올 議定書의 比較 分析

1. 몬트리올 議定書와 교토 議定書의 基本特性 比較

첫째, 몬트리올 議定書와 교토 議定書는 모두 지구환경의 大氣부문에 대한 國際環境協約으로 온실가스 및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데 있다. 몬트리올 議定書의 경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減縮 또는 완전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토 議定書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減縮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토 議定書 제2조 6항, 7항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교토 議定書는 몬트리올 議定書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 않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 및 저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몬트리올 議定書와 교토 議定書는 모두 기본골격 협약을 먼저 채택한 후,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쳐 議定書를 채택하였다¹⁷⁾. 몬트리올 議定書는 1985年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協約이 기본골격 협약이며 이후 2年 6개월만에 議定書를 채택하였다. 한편 교토 議定書는 1992年의 UN 氣候變化協約이 기본골격 협약이며 이후 5年 6개월만에 議定書를 채택하였다.

셋째, 몬트리올 議定書와 교토 議定書는 모두 그 파급범위가 世界經濟와 貿易全般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協約의 性格을 갖는다. 단지 파급범위에 있어서 몬

17) 李相敦, “氣候變化協約의 履行과 國際貿易規範”, 通商法律, 通卷 第9號, 法務部, 1996. 6. p.105.

트리올議定書는 오존층 파괴물질과 관련된 산업에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데 대해 교토議定書는 化石燃料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산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몬트리올議定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에 수출입 금지, 감축의무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의 貿易規制條項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교토議定書에는 구체적인 貿易規制條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당사국이 CO₂ 배출량 삭감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CO₂ 배출량을 규제할 경우 그것은 바로 貿易規制의 형태로 나타나 수출비중이 큰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化石燃料의 사용규제로 관련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 동 산업의 수출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몬트리올議定書와 교토議定書는 모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살아 움직이는 協約이다. 몬트리올議定書는 1987年 채택이후 1990年에 제 1차 개정서(1992年 8月 발효), 1992年 제 2차 개정서(1994年 6月 발효), 1997年 제 3차 개정서(1999年 11月 발효), 1999年 제 4차 개정서를 채택하는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대상을 당초 8種에서 96種으로 확대하였으며 삭감 일정도 단축 강화하였다.

한편 교토議定書에서도 당초 UN 氣候變化協約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CO₂, CH₄, N₂O의 3種에 HFC, PFC, SF₆를 추가시켰다. 또한 비록 교토議定書가 아직 정식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대립속에서도 교토議定書의 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금년 11月 개최되는 氣候變化協約 제 6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정식 발효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토議定書의 貿易規制 展望

교토議定書는 몬트리올議定書와 같이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에 수출입 금지, 감축의무불이행에 대한 수출규제 등의 貿易規制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CO₂가 世界 經濟와 貿易 全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國際環境協約의 성공적 모델인 몬트리올議定書와의 比較 分析을 통해 교토議定書의 貿易規制 內容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온실가스 규제목표의 설정, 기한, 대상가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출입 規制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선진국(Annex I)은 2008~2012年間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年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여야 하며,

각국별로는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러시아·뉴질랜드는 0%, 호주는 +8%, 아이슬랜드는 +10%이다. 예를 들어 EU는 온실가스의 8%를 감축하도록 목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산업별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¹⁸⁾ 즉, 1998年 10月 EU 환경위원회와 EU 자동차공업계는 '新車로부터의 CO₂ 배출감축을 위한 협약'¹⁹⁾을 승인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08年까지 1995年 대비 25% 감축되는 140g/km의 CO₂ 배출기준(평균 연비 5.7ℓ/100km)을 준수하여야 하고 2003년에는 2012년까지 120g/km의 CO₂ 배출기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는 곧바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었는데 1999年 6月 우리 나라 자동차협회와 EU 자동차협회는 CO₂ 배출기준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EU 환경위원회와 EU 자동차공업계가 승인한 CO₂ 배출감축 협약을 따르되 목표연도를 1年씩 유예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9년까지 신제품 승용차에 대하여 140g/km의 CO₂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2004년까지 평균 수입자동차의 CO₂ 배출기준을 165-175g/km로 감축하며, 2012년까지 120g/km 배출 자동차 생산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둘째,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수출입 금지에 대한 조항은 없으나 모든 당사국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통계 현황 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시행, 온실가스 흡수원 보호 및 확대, 연구 및 관측, 공공인식 제고, 국가보고서 제출의 의무가 있다. 특히 국가보고서는 Annex I 국가의 경우 정책 및 조치의 상세한 내용 및 효과분석 보고를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

18) EU 보도자료(ue.eu.int/Newsroom).

19) an Environmental Agreement with the ACEA(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on CO₂ Emission reduction from new passenger cars.

에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UN 氣候變化協約 제 3 조 5 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모든 당사국(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개발을 촉진하여 당사국이 氣候變化의 문제에 더욱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적이며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며, 氣候變化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일방적인 것을 포함)가 국제무역에서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수단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제출의 의무에 있어서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책 및 조치 현황 보고를 協約 발효 후 3년 이내 또는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첫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넷째, 협약 의무사항 미준수국에 대한 대응은 교토議定書 제 18 조에 규정에 따라 교토議定書가 발효된 후 첫 번째 의정서총회에서 감축의무 이행위반에 관련하여 원인, 형태, 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및 확인방법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 및 방법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V. 結 論

UN 氣候變化協約과 교토議定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각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8年 4月 국무총리 산하에 氣候變化協約관련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氣候變化協約에 따른 국익차원에서의 협상전략 수립, 온실가스 배출 저감노력 확산방안 수립, 온실가스 국제거래 참여 방안 구축 등 과제를 중심으로 대외협상대책·국내대응과제의 발굴 등을 추진해 왔다.²⁰⁾ 또한 1999年 4月에는 環境·貿易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環境·貿易 連繫論議와 관련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국제논의동향 분석,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책방안, 협상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시책을 대폭 강화하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전력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국무조정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1999.2. p.4.

많은 업종과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1998~2000年)을 체결하고 실천업체에 대하여는 자금·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자력·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 농림·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氣候變化協約 관련 기반조성대책 강화를 위해 地球溫暖化 防止를 위한 根據 法令 제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산림법 등 관련 法律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²¹⁾

우리 나라는 UN 氣候變化協約上 아직까지는 開途國으로 분류되어 있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除外되어 있지만 1996年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이미 합류하였고 先進國으로부터 環境規制의 글로벌스탠더드 압력이 可視化되고 있는 속에서 국가와 기업이 향후 해결해야 할 課題 중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토議定書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단계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1999年 10月 8日 의회에서 CO₂ 배출량을 1990年 수준에서 2010年까지 10% 감축시키는 法을 통과시켰다. 이 法에 의하면 만일 기존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방회의가 이산화탄소세를 도입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10% 감축 목표는 교토議定書에 규정된 스위스의 목표치인 8%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교토議定書가 채택된 다음해인 1998年 10月 2日 地球溫暖化對策의 推進에 관한 法律이 參議院本會議에서 可決되어 10月 9日 공포되었으며 1999年 4月에는 地球溫暖化對策의 推進에 관한 法律 施行令이 공포되었다. 우우리 나라도 1999年 2월에 수립한 綜合對策에 의하면 地球溫暖化防止法²²⁾을 1999年 12月까지 제정하고 2000年 이후 시행토록 계획하였는 바, 온실가스 의무감축 여부와 상관없이 조속한 실천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국내 활용의 根據 規定을 마련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선진국·개도국간 공동이행 사업, 배출권거래 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은 운영에 따라 貿易規制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국제간 배출권거래는 향후, 해외직접투자(FDI), 무역 및 금융거래에 새로운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

21) 국무조정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 전게서, pp.7~9.

22) 1999年 5月 8日 字 경향신문.

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대상 프로젝트는 電源 개발, 사회간접자본, 일반 건축물, 造林, 자동차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구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²³⁾

셋째, 자동차 산업 이외의 산업에서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대상 6개 중 2개(PFC, SF6)가 반도체 산업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 감축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999年 4月 세계반도체협회(WSC)가 중심이 되어 PFC에 대해서 1995年 배출량 기준으로 2010年까지 10% 감축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7年 기준으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세계반도체업계에서의 한국의 PFC 사용량은 11.6% 정도로 미국(60%), 일본(15%)에 이어 3번째 규모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기업은 환경관련 기술개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氣候變化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나 오존파괴 물질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대체물질, 대체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자원 절약을 위한 자원 회수·재이용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法律을 정비함으로써 환경친화기업만이 초일류기업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23) 황진택, “국제환경동향과 산업계 과제 -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품질환경인증협회 KAB 발표자료, 1999.9.

參考文獻

- 강만옥·임현정,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1999. 12.
- 강상인·박준영, 국제환경규제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12.
- 金正均·成宰豪, 國際法, 博英社, 1998.
-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999. 8.
-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1 세기의 화두 기후변화협약 - 그 실체와 대응, 1998. 8.
- 기후변화협약의 이해 - 교토메커니즘을 중심으로, 1998. 12.
- 徐哲源, “WTO 體制에서의 貿易과 環境保護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請求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7.
- 外務部,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참가보고서, 1997. 12.
- 이광은, “환경보호와 국제통상”, 국제통상연구, 第2卷 第1號, 한국국제통상학회, 1997.
- 李相敦, “氣候變化協約의 履行과 國際貿易規範”, 通商法律, 通卷 第9號, 法務部, 1996. 6.
- 박원화, “기후변화협약 교토총회 결과와 우리의 省察”, 國際法律經營, 通卷 35號, 國際法律經營研究院, 1998 봄.
- 백택선,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韓國商學, 第14卷 第3號, 韓國國際商學會, 1999. 11.
- 庾相喜, 國際環境規制와 産業競爭力, 産業研究院, 1997.
- 張僖天, “環境保護를 理由로 한 貿易規制의 法的 限界(上) - WTO/GATT 體制를 中心으로 -”, 通商法律, 通卷 第17號, 法務部, 1997. 10.
- _____, “環境保護를 理由로 한 貿易規制의 法的 限界(下) - WTO/GATT 體制를 中心으로 -”, 通商法律, 通卷 第18號, 法務部, 1997. 12.
- 全京一, “WTO와 國際環境協約上的 貿易制限條項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請求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7.
- 鄭鎮百, “WTO體制下的 環境保護에 근거한 國際貿易規制”, 博士學位請求論文, 釜山大學校 大學院, 1997.
- 崔哲泳, “貿易·環境 問題와 WTO(上) - WTO規範과 環境保護를 위한 貿易措置

- 의 關係를 中心으로 - ”, 通商法律, 通卷 第 13 號, 法務部, 1997. 2.
- _____, “貿易·環境 問題와 WTO(下) - WTO規範과 環境保護를 위한 貿易措置
의 關係를 中心으로 - ”, 通商法律, 通卷 第 14 號, 法務部, 1997. 4.
- 환경부,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연구, 1999. 12.
- 國則守生, 松村敏弘, “環境問題と國際協調 - 地球溫暖化を中心として - ”, 經濟研究,
Vol 50, No. 1. 1999. 1.
- 佐和隆光, “地球溫暖化問題と文明の轉換”, 日本經濟研究center會報, 2000. 1.
- Barrett, Scotte, “D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Really Works?”,
Weathervane(www.weathervane.rff.org/pop/pop4/barrett.html)
- OECD, “Trade Measures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Syn-
thesis Report of Three Case Studies”, COM/ENV/TD(98)127/FINAL.
- Slope, Peter B. and Blowers, Andrew(ed), *Environmental Problems as Con-
flicts of Interest*, Arnold, 1996.

ABSTRACT

**The Trade Regulation in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on Climate Change**

Chung, Ye-Mo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ozone depletion,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been caused by the rapid economic growth, increasing in use of fossil fuels for industrializa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Especially human activities are significantly altering the atmosphere's composition and its radiative properties.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1992 and Kyoto protocol in 1997. Also to protect ozone lay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in 1985, and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in 1987.

To achieve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som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e trade regulation. For example, Montreal Protocol includes the provisions to regulate the world trade of the substances which might destroy ozone layer. However Kyoto Protocol has no provisions to regulate trade and is not in force yet. Although there is no trade regulation article in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world trade will be influenced by limitation and reduction of CO₂ and strengthening the CO₂ emission standard for import goods. For example Korean car industry agreed with EU to reduce CO₂ emission from new passenger cars and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agreed with 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 to reduce PFCs in 1999.

Keywords : Kyoto Protocol, Environment, Trade regulation